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제3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법령	과태료 금액
1. 법 제8조 후단을 위반하여 대규모점포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가. 1차 위반 나. 2차 위반 다. 3차 이상 위반	법 제52조 제1항제1호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2.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가. 1차 위반 나. 2차 위반 다. 3차 이상 위반	법 제52조 제1항제2호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3.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 가. 1차 위반 나. 2차 위반 다. 3차 이상 위반	법 제52조 제1항제3호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4. 법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 가. 경과일수 10일 이내 나. 경과일수 10일 초과 20일 이내 다. 경과일수 20일 초과 30일 이내 라. 경과일수 30일 초과 60일 이내 마. 경과일수 60일 초과 100일 이내 바. 경과일수 100일 초과 200일 이내 사. 경과일수 200일 초과 365일 이내 아. 경과일수 365일 초과	법 제52조 제1항제4호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8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 법 제33조제1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 가. 1차 위반 나. 2차 위반 다. 3차 이상 위반	법 제52조 제1항제5호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6. 법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위보고를 한 자	법 제52조 제1항제6호	300만원